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53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김위상・박준태・권성동

김승수 · 임이자 · 박정하

성일종 • 정동만 • 김용태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,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,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·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·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15 신설).

또한,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

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제17조제3항 신설).

아울러 기존에는 시·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,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"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"를 "환경부장관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"로 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지정절차"를 "지정절차,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"로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장의2에 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15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및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 다만,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

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	제4조(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	4
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	
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	
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	
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(이하	
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	
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	<u>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</u>
시행하여야 한다. 지역계획을	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
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)	제17조(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
	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
	들어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기밀
	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
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	<u>다.</u>
$\underline{3}$ 제 1 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	<u>4</u>
정기준, <u>지정절차</u> 와 그 밖에 필	<u>지정절차, 제3항에 따른</u>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의견수럼 절차

다. ④ (생 략) <신 설>

--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23조의15(과징금의 부과·징수
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23조의7
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
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 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

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

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

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

있다. 다만, 토양정화업자가 매

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

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

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

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되,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

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 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한다.

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